

## 산업재산권법전 제1판 정오표

산업재산권법 제1판 교재가 출간된 이후,

개정된 특허법/상표법/디자인보호법을 반영한 추록입니다.

조문번호	정정 전	정정 후
특허법 제84조 제3항	③ 제1항에 따른 특허료 및 수수료의 반환 청구는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<b>3년</b> 이 지나면 할 수 없다.	③ 제1항에 따른 특허료 및 수수료의 반환 청구는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<b>5년</b> 이 지나면 할 수 없다.
상표법 제79조 제3항	③ 제1항에 따른 상표등록료 및 수수료의 반환청구는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<b>3년</b> 이 지나면 할 수 없다.	③ 제1항에 따른 상표등록료 및 수수료의 반환청구는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<b>5년</b> 이 지나면 할 수 없다.
디자인보호법 제220조 제2항	② 제1항의 죄는 <b>고소가 없으면</b>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.	② 제 1 항의 죄는 <b>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</b>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.
디자인보호법 제87조 제3항	③ 제1항에 따른 등록료 및 수수료의 반환 청구는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<b>3년</b> 이 지나면 할 수 없다.	③ 제1항에 따른 등록료 및 수수료의 반환 청구는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<b>5년</b> 이 지나면 할 수 없다.